의 안 번 호

2234

[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4. 2. 29.(목)

O 제 출 자:정재환 의원 외 9명

O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9.(목)

O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3. 14.(목)

2. 제안이유

O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에 기 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O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O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O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O 비밀준수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O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
5. 검토의견

O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하고, 이를 위한 관련 법인·단체·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.

O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- **제2조(국민의 협력 등)**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 -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"보호관찰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형법」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 - 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 - 3. 「형법」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 - 4.「소년법」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 - 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 -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"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형법」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 - 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 - 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 -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"갱생보호 대상자"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